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1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김위상・우재준・김선교

임이자 · 서범수 · 김예지

조경태 · 김대식 · 이인선

송석준 · 김소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.

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・비치하도록 하고,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・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5호,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

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"이차전지"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연구주체의 장"을 "연구주체의 장 (제10호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 책에 관한 사항

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차전지소재, 이차전지설계 또는 이차전지제어관리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제1항제5호 중 "제20조제2항"을 "제20조제2항·제5항"으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3호 중 "제20조제2항·제3항"을 "제20조제2항·제3항· 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5. "이차전지"란 「환경친화적
	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
	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
	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
	<u>다.</u>
제12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	제12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
준수 등) ① <u>연구주체의 장</u> 은	준수 등) ① <u>연구주체의 장(제1</u>
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	0호의 경우에는 이차전지 관련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	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
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	의 장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
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,	<u>조에서 같다)</u>
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	
야 한다.	
	,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

10. (생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20조(교육·훈련) ① ~ ④ (생략)

<신 설>

⑤ (생략)

- 제33조(시정명령)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
 - 1. ~ 4. (생 략)
 - 5. <u>제20조제2항</u>을 위반하여 연 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·

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

- 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교육·훈련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

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주 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차전지소재, 이차전지설계 또 는 이차전지제어관리 등에 관 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에는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 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 육・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33조(시정명령) ①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<u>제20조제2항ㆍ제5항</u>-----

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 니한 경우

- 6. ~ 8. (생략)
- ② (생 략)
- 제41조(권한·업무의 위임 및 위 ⁷ 탁) ① (생 략)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<u>제20조제2항·제3항</u>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·훈련 및 전문교육의 기획· 운영에 관한 업무
 - 4. ~ 7. (생략)
 - ③ (생 략)

6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1조(권한・업무의 위임 및 위
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20조제2항·제3항·제5항</u> -
4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